



한국장학재단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'22년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(희망사다리 I 유형) 신규장학생 참여대학 모집 및 추진일정 안내

1.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일자리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(희망사다리 I 유형)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2. 위와 관련하여 '22년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(희망사다리 I 유형)의 참여 대학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대학은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대상대학

○ (기본요건)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, 제2호, 제4호 해당 대학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, 과학기술원, 전통문화대, 농수산대

-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, 제2호 및 제4호(대학, 산업대학, 전문대학)
-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(서울대)
-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(인천대)
-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(KAIST)
-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(광주과학기술원)
-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(대구경북과학기술원)
-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(울산과학기술원)
-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(한국전통문화대학교)
-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(한국농수산대학교)

※ (지원제한)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(구, 대학구조개혁평가)에서 재정지원제한 II 유형(구, E등급)으로 분류된 대학

지원대상 및 지원내용

○ (지원대상)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,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(※신·편입(재입학)생은 성적 심사 제외)

- 취업지원형 :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·중견기업 취업(희망)자
- 창업지원형 :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(희망)자

※ 수혜종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, 편입한 첫 학기에 한해 신규장학생으로 재신청 가능

※ 계약학과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,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허용

○ (지원내용) 등록금 및 취·창업지원금

- 등록금 :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* 지원
- 취·창업지원금 :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200만원 지원
- *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하며, 장학생 요건 미충족 시 지원 중단

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○(참여대학 신청기간) '22.8.29.(월)~ 9.22.(목),16:00까지

○(학생 신청기간) '22.9.5.(월)~ 9.29.(목),18:00까지

* 상기 일정은 사업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, 필요 시 공문 재안내

<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(희망사다리 I 유형) 참여 절차 >

①사업시행 및 참여 대학 모집	②대학 담당자 권한 신청	③사업 참여신청	④학생 신청
재단→대학	▶ 대학→대학/재단	▶ 대학→재단	▶ 학생→재단
전자공문 등	관리자포탈	관리자포탈	재단 홈페이지

○ (대학 신청방법) 관리자포탈(대학/기관 학자금지원시스템,

· <http://eduman.kosaf.go.kr>) 활용

가. 관리자포탈→장학→희망사다리장학금→대학정보→사업 참여 신청

나. 상품유형(취업지원형·창업지원형) 및 연도·학기 선택('22년 2학기)

다. 희망사다리장학사업 '사업 참여 여부' 선택 후 저장 [붙임]의 매뉴얼 필독

- ▶ 2개 유형 모두 참여를 원하는 경우, 유형별 참여 여부를 각각 저장
- ▶ 신규장학생 선발없이 계속장학생만 유지하는 경우, 사업 참여 신청 필요 없음
- ▶ 신규 담당자일 경우, 소속 대학의 대표관리자에게 화면조회 권한을 신청해야 함
- 대표관리자는 재단 교직원 콜센터에서 확인 가능(1599-2280)

장학생 의무사항 및 대학 주요 업무

○장학생 의무사항 : 정보제공 동의, 의무교육 이수, 의무종사

- 정보제공 동의 :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
- 의무교육 : 장학생 온라인사전교육(장학금 신청 시),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
- 의무종사 :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·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음 (수혜학기×6개월)

※ 의무종사 불이행 시, 등록금 및 취·창업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므로 각별히 유의

○ 대학 주요 업무

